

정 관

규정번호 : 1111

개정번호 : 43

제정일자 : 1968. 12. 12

개정일자 : 2025.03.28

담당부서 : 총 무 팀



《 목 차 》

제 1 장 총칙 -----	1
제 1 조 상호	
제 2 조 목적	
제 3 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제 4 조 공고 방법	
제 2 장 주식 -----	2
제 5 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제 6 조 일주의 금액	
제 7 조 주식의 종류	
제 8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제 8 조의 2 상환주식의 수와 내용 <삭 제>	
제 9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 10 조 신주인수권	
제 10 조의 2 동등배당	
제 10 조의 3 일반공모증자 등 <삭 제>	
제 10 조의 4 주식매수선택권	
제 11 조 시가 발행 <삭 제>	
제 12 조 명의개서 대리인	
제 12조의 2 주주명부 작성·비치	
제 13 조 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 제>	
제 14 조 기준일	
제 3 장 사채 -----	6
제 15 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 16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제 17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7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 4 장 주주총회 -----	8
제 18 조 소집시기	
제 19 조 소집권자	
제 20 조 소집통지 및 공고	
제 21 조 소집지	
제 22 조 의장	
제 23 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	
제 24 조 주주의 의결권	
제 25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제 26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 27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 28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제 29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제 5 장 이사, 이사회 ----- 9

- 제 30 조 이사의 수
- 제 31 조 이사의 선임
- 제 32 조 이사의 임기
- 제 33 조 이사의 보선
- 제 34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 제 35 조 이사의 직무
- 제 35 조의 2 이사의 의무
- 제 35 조의 3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제 36 조 감사의 직무 <삭 제>
- 제 37 조 감사의 감사록 <삭 제>
- 제 38 조 이사회와 구성과 소집
- 제 38 조의 2 위원회 <삭 제>
- 제 38 조의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삭 제>
- 제 38 조의 4 감사위원회 <삭 제>
- 제 38 조의 5 감사위원회의 직무 <삭 제>
- 제 39 조 이사회와 결의 방법
- 제 40 조 이사회와 의사록
- 제 40 조의 2 위원회
- 제 41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제 42 조 상담역 또는 고문

제 6 장 감사위원회 ----- 13

- 제 42 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 제 42 조의 3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제 42 조의 4 감사의 보선 <삭 제>
- 제 42 조의 5 감사의 직무 등 <삭 제>
- 제 42 조의 6 감사록 <삭 제>
- 제 42 조의 7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삭 제>

제 7 장 계산 ----- 14

- 제 43 조 사업연도
- 제 44 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 제 44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삭 제>
- 제 45 조 이익금의 처분
- 제 45 조의 2 주식의 소각
- 제 46 조 이익배당
- 제 47 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부 칙 ----- 15

제 정 1968. 12. 12
 25회개정 1988. 11. 29
 26회개정 1989. 11. 30
 27회개정 1990. 11. 29
 28회개정 1991. 11. 29
 29회개정 1993. 11. 26
 30회개정 1996. 12. 27
 31회개정 1997. 12. 09
 32회개정 1998. 12. 09
 33회개정 1999. 02. 26
 34회개정 2001. 03. 16
 35회개정 2002. 03. 15
 36회개정 2008. 03. 21
 37회개정 2010. 03. 19
 38회개정 2011. 10. 14
 39회개정 2013. 11. 01
 40회개정 2019. 03. 27
 41회개정 2020. 09. 22
 42회개정 2021. 03. 30
 43회개정 2025. 03. 28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대한해운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LINE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운업
2. 해운 중개업 및 해운대리점업
3. 항만 운송 사업
4. 선박 매매업 및 용대선 사업
5. 선박대여업 및 안전관리대행업
6. 항구 및 기타해양시설 운영업
7. 보관 및 창고업
8. 소프트웨어사업, 정보통신사업, 정보통신서비스업 및 부가통신사업관련
 개발, 판매용역, 임대, 설치, 유지보수업무
9. 인력과견업
10.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1. 건설업 및 토목업
12. 주택건설업 및 분양공급업

- 13. 부동산 시행업 및 관련 부대업무
- 14. 수출입 업무
- 15.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16. 기타 필요 또는 유익한 업체에의 투자

제 3 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 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ealine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십억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8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억오천만주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 1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 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 8 조의 2 (상환주식의 수와 내용) <삭 제 2013.11.00>

제 9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사업확장,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개선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제휴회사, 일반법인, 개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공익채권 및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 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경영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타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내외 타회사에 투자할 때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의 2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종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10 조의 3 (일반공모증자 등) <삭 제 2013.11.00>

제 10 조의 4 (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한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 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1 조 (시가 발행) <삭 제>

제 12 조 (명의개서 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의 2 (주주명부 작성 · 비치)

-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3 조 (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 제>

제 14 조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5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제휴회사, 일반법인, 개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열회사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영업활동,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 경영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타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내외 타회사에 투자할 때 그 대가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보통주식으로 이천오백억원 이내,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오백억원 이내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 16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제휴회사, 일반법인, 개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열회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영업활동, 자본채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경영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타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내외 타회사에 투자할 때 그 대가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보통주식으로 이천오백억원 이내,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오백억원 이내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 17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무처리를 위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경우에는 제12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8 조 (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9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0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국내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1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사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2 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5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3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4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5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6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7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9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제 30 조 (이사의 수)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삭 제>

③ 이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姓)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이사 선임시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한 집중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

제 32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3 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 제>

제 34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합당한 직위 및 업무를 부여 한다.

제 35 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각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결정된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제 35 조의 2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5 조의 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등의 법률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6 조 (감사의 직무) <삭 제>

제 37 조 (감사의 감사록) <삭 제>

제 38 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소집권자를 정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서를 발송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제 38 조의 2 (위원회) <삭 제 2013.11.00>

제 38 조의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삭 제 2013.11.00>

제 38 조의 4 (감사위원회)<삭 제 2013.11.00>

제 38 조의 5 (감사위원회의 직무)<삭 제 2013.11.00>

제 39 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40 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0조의 2 (위원회)

- ① 이사회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 경영위원회
 - 3. 기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4. 감사위원회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41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2 조 (상담역 또는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회사의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

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42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⑤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 42조의 3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제 1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2조의 4 (감사의 보선) <삭 제>

제 42조의 5 (감사의 직무 등) <삭 제>

제 42조의 6 (감사록) <삭 제>

제 42조의 7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삭 제>

제 7 장 계 산

제 43 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4 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 ① 대표이사는 다음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4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삭제>

제 45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5 조의2 (주식의 소각)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 46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조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 47 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2008.03.21)

1.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른다.
2.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사외이사에 관한 경과규정)

- ① 제32조 제1항의 사외이사 임기와 관련한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후 선임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2008. 3. 21)
- ② 이 정관 개정일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2008. 3. 21)

부 칙(2010.03.19)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개정내용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2.(일반공모증자등 및 전환사채 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 및 제15조 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2010. 3. 19)

부 칙(2011.10.14)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01)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3.27)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7조의2의 개정 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 2. (이사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제32조의 이사 임기와 관련한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선임되는 이사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
- 3. (사외이사에 관한 경과규정)
이 정관 개정일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20.09.22)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30)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항의 개정 내용은 202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3.28)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